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8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지 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2 |
| 1.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법률에 규정 및 대주주 기준 보유<br>금액 상향 ..... | 2 |



## I. 개요

### 1.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586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9. 1.
- (3) 회 부 일 : 2025. 9. 2.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등).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법률에 규정 및 대주주 기준 보유금액 상향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lt;신 설&gt;</div> <div><div>○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br/>(시행령 제157조 및 제167조의8)</div><div>- 지분율 및 보유금액 요건</div></div> <table><tr><th>구 분</th><th>지분율</th><th>보유금액</th></tr><tr><td>코스피</td><td>1%</td><td rowspan="3">50억원</td></tr><tr><td>코스닥</td><td>2%</td></tr><tr><td>코넥스</td><td>4%</td></tr><tr><td>비상장주식</td><td>4%</td><td>10억원</td></tr></table> <div><div>□ 대주주 관련 기타조항</div><div><div>- 양도소득의 범위(제94조)</div><div>- 양도소득세의 세율(제104조)</div><div>- 거주자 출국시 납세의무(제118조의9)</div></div></div> | 구 분   | 지분율   | 보유금액 | 코스피 | 1% | 50억원 | 코스닥 | 2% | 코넥스 | 4% | 비상장주식 | 4% | 10억원 | <div><div>□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div><div><div>○ 대주주 기준 법률에 규정 및 대주주 기준 보유금액 상향(제94조의2)</div><div>- 보유금액 상향조정</div></div></div> <table><tr><th>구 분</th><th>지분율</th><th>보유금액</th></tr><tr><td>코스피</td><td>1%</td><td rowspan="3">100억원</td></tr><tr><td>코스닥</td><td>2%</td></tr><tr><td>코넥스</td><td>4%</td></tr><tr><td>비상장주식</td><td>4%</td><td></td></tr></table> <div><div>□ 용어 정비</div><div><div>-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div><div>→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div><div><div>○ (시행일) 2026년 1월 1일</div><div>○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div></div></div></div> | 구 분 | 지분율 | 보유금액 | 코스피 | 1% | 100억원 | 코스닥 | 2% | 코넥스 | 4% | 비상장주식 | 4% |  |
| 구 분                                                                                                                                                                                                                                                                                                                                                                                                                                                                                               | 지분율   | 보유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스피                                                                                                                                                                                                                                                                                                                                                                                                                                                                                               | 1%    | 5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스닥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넥스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장주식                                                                                                                                                                                                                                                                                                                                                                                                                                                                                             | 4%    | 1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지분율   | 보유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스피                                                                                                                                                                                                                                                                                                                                                                                                                                                                                               | 1%    | 10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스닥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넥스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장주식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 제94조<sup>1)</sup>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sup>2)</sup>에서는 “대주주”를 주식등의 양도일

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주식 비율 또는 소유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주주 1인”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 중에서 최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주주 1인의 소유주식 비율의

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③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2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1.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직계존비속
    -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 ⑦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⑧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⑨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해당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본다.

합계가 해당 법인에서 최대인 경우에는 친족관계<sup>3)</sup> 및 경영지배관계<sup>4)</sup>에 있는 자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함.

구체적으로 ㉔ 소유주식의 비율기준과 관련하여는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코스피 상장법인은 1% 이상, 코스닥 상장법인은 2% 이상, 코넥스 상장법인은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판단하고,

㉕ 소유주식의 “시가총액”과 관련하여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를 “대주주”로 판단하고 있음.

#### [대주주의 범위 변경 연혁: 상장주식]

| 구 분 | 기 준  | 2000년 1월 | 2005년 8월 | 2013년   | 2016년 | 2018년 | 2020년 | 2024년 |
|-----|------|----------|----------|---------|-------|-------|-------|-------|
| 코스피 | 지분율  | 3%       |          | 2%      | 1%    |       |       |       |
|     | 시가총액 | 100억원    |          | 50억원    | 25억원  | 15억원  | 10억원  | 50억원  |
| 코스닥 | 지분율  | 3%       | 5%       | 4%      | 2%    |       |       |       |
|     | 시가총액 | 100억원    | 50억원     | 40억원    | 20억원  | 15억원  | 10억원  | 50억원  |
| 코넥스 | 지분율  | -        |          | 4%      |       |       |       |       |
|     | 시가총액 | -        |          | 10억원 이상 |       |       |       | 50억원  |

\* 코넥스 시장은 2013년 7월 개설되었음.

\* 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범위)를 기초로 재작성

3)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4) 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연혁: 비상장주식]

| 기 준  | 2017년 2월 | 2018년 4월 | 2020년 4월<br>(현행) |
|------|----------|----------|------------------|
| 지분율  | 4%       |          |                  |
| 시가총액 | 2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범위)를 기초로 재작성

참고로 2023년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5조 3,266억원이고, 전체 양도소득세액에서의 차지하는 비율은 30.3%임.

[2021년~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세수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국내주식<br>양도차익 | 국내주식<br>양도소득세액(A) | 전체<br>양도소득세액(B) | 비중(A/B) |
|-------|--------------|-------------------|-----------------|---------|
| 2020년 | 186,987      | 39,378            | 236,557         | 16.6    |
| 2021년 | 319,869      | 68,284            | 367,072         | 18.6    |
| 2022년 | 221,253      | 50,141            | 322,332         | 15.6    |
| 2023년 | 244,858      | 53,266            | 175,560         | 30.3    |

자료: 국세통계연보 5-2-7-2

□ 개정안에 대하여는 ①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과, ②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헌법 제59조<sup>5)</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이고,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할 수 있음

과세요건이란 과세권행사에 필요한 요소로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되며, 과세요건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법률로 정해야 하고 법률의 근거없이 하위법령에서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개정안은 과세대상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식시장 혼란 등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됨.

- 다음, “대주주” 판정과 관련한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대

---

5)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주주 기준으로 인한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매도 현상 등 시장 왜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주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과세의 원칙이 약화되는 것으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수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대주주 기준 완화 효과는 일부 고소득자에 게만 국한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종목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코스피 시장 1,828명, 코스닥 시장 2,043명이며, 개정안과 같이 종목별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대주주에서 제외되는 사람(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코스피 시장 596명, 코스닥 시장 778명이 해당됨.

## [2024년 코스피·코스닥 시장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현황]

(단위 : 명, 천주, 백만원)

| 종목별<br>보유금액       |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             |             | 코스닥시장      |            |             |
|-------------------|--------------|-------------|-------------|------------|------------|-------------|
|                   | 주주 수         | 주식 수        | 보유금액        | 주주 수       | 주식 수       | 보유금액        |
| 100억 이상           | 1,232        | 4,537,890   | 148,055,589 | 1,265      | 5,066,253  | 58,897,771  |
| 100억 미만<br>50억 이상 | 596          | 535,654     | 4,270,411   | 778        | 1,420,918  | 5,558,488   |
| 50억 미만            | 48,321,644   | 147,594,624 | 294,112,769 | 34,169,913 | 28,788,068 | 143,146,228 |
| 합계                | 48,323,472   | 22,668,168  | 446,438,769 | 34,171,956 | 35,275,239 | 207,602,487 |

주」 ① 12월 결산법인 대상 집계, ② '24.12.30. 종가 기준 집계(단, 예탁결제원은 가격정보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정확성은 담보되지 않음에 유의), ③ 합계는 구간별 데이터를 단순 합산하여 표시, ④ 종목별 주주의 보유금액 기준으로 집계(특정 주주가 코스피 A 종목 주식 10억, B 종목 주식 40억 보유시, 10억 이상 50억 미만 구간에 2명으로 집계)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문 의 처

02)6788-5148